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4 중 중앙평생학습관 란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4〕 평생학습관의 명칭·위치			〔별표4〕 평생학습관의 명칭·위치			〔별표4〕 평생학습관의 명칭·위치		
평생 학습관명	소재지	비 고	평생 학습관명	소재지	비 고	평생 학습관명	소재지	비 고
<신 설>			중앙평생 학습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68		<삭제>		
마포평생 학습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41-1		마포평생 학습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41-1		마포평생 학습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41-1	
중계평생 학습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508		노원평생 학습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508		노원평생 학습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508	
고덕평생 학습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296		고덕평생 학습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296		고덕평생 학습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296	
영등포 평생학습관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당산동 121-297		영등포 평생학습관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당산동 121-297		영등포 평생학습관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당산동 121-297	

(다음 페이지에 계속)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중 “법률 제33조 내지 제36조”를 “법률 제30조 내지 제34조”로 한다.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7조, 제21조, 제35조, 제39조의 본문중

“법 제34조”를 “법 제32조”로 한다.

제3장중 제1절의 2를 제2절로 하고, 제2절 및 제3절을 제3절 및 제4절로 하고, 제4절 내지 제8절을 제6절 내지 제10절로 하고, 제5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

제20조의 2 (설치) ① 법제32조 및 「유아교육법」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하고,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개발, 유아교육 관련 각종 연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이하“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유아교육진흥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27번지에 둔다.

제20조의 3 (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통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의 4 (업무) 유아교육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3. 유아교육 관련 각종 연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2조 및 「평생교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기회 제공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32조 제5호 및 제6호를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제1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을 위한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및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에 관한 사항

제3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37조의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1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에 관한 사항
2. 지방행정자료, 향토자료 등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6. 분관 및 교육사료관 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4]

평생 학습관의 명칭·위치

평생 학습관명	소재지	비고
마포평생 학습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41-1	
노원평생 학습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508	
고덕평생 학습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296	
영등포평생 학습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29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2 내지 제20조의 4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내지 제36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 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 -- 제34조 ----- ----- ----- -----</p>
제3장 직속기관	제3장 직속기관
<p>제1절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p> <p>제10조(설치)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교육시책을 연구·개발하고,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분석하여 교수 학습에 관한 교육정보·자료를 구축·제작·보급하며, 현장지도·교육상담·진로 교육 및 산업교육의 연구·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이하 "교육연구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p> <p>② (생략)</p> <p>제1절의 2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p> <p>제12조의 2(설치) ① 법 제34조 및 과학교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학생의 과학교육과 교원의 과학연수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생활과학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이하 "과학전시관"이라 한다)을 둔다.</p> <p>② (생략)</p> <p>제2절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p> <p>제13조(설치) ① 법 제34조 및 지방공무원</p>	<p>제1절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p> <p>제10조(설치) ① 법 제32조-----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절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p> <p>제12조의 2(설치) ① 법 제32조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절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p> <p>제13조(설치) ① 법 제32조-----</p>

(다음 페이지에 계속)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제4절</u>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p> <p>제21조(설치) ① <u>법 제34조의</u>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연구와 학교보건·환경위생·학교급식에 관한 점검·관리 지원 및 연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보건진흥원(이하 "학교보건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p>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제5절</u>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p> <p>제25조~제29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제6절</u>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p> <p>제30조(설치) ① <u>법 제34조 및 평생교육법 제13조의</u> 규정에 의하여 지역문화센터로서 학습자료를 비치하여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둔다.</p>	<p><u>제20조의 4 (업무) 유아교육진흥원은</u>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3. 유아교육 관련 각종 연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u>제6절</u>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p> <p>제21조(설치) ① <u>법 제32조</u> ----- ----- ----- -----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제7절</u>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p> <p>제25조~제29조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제8절</u>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p> <p>제30조(설치)①<u>법 제32조 및 「평생교육법」 제13조의</u>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기회 제공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둔다.</p>

(다음 페이지에 계속)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② (생략)</p> <p>제32조(업무) 평생 학습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평생학습 및 문화활동지원에 관한 사항</u> 2. <u>교육상담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u> 3. <u>자료대출·열람에 관한 사항</u> 4. <u>독서안내·상담 및 열람지도에 관한 사항</u> <p><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u>분관 운영에 관한 사항</u> 6. <u>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u> <p style="text-align: center;">제7절 서울특별시립도서관</p> <p>제35조(설치) ①법 제34조 및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을 비치하여 시민의 열람에 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p> <p>② (생략)</p> <p>제37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2조(업무)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u> 2. <u>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u> 3. <u>평생학습을 위한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에 관한 사항</u> 4. <u>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및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에 관한 사항</u> 5. <u>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에 관한 사항</u> 6. <u>분관 운영에 관한 사항</u> 7. <u>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u> <p style="text-align: center;">제9절 서울특별시립도서관</p> <p>제35조(설치) ①법 제32조 및 「<u>도서관법</u>」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이하 “<u>도서관</u>”이라 한다)을 둔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7조(업무)----- -----.</p>

